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정 및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중요소송에 포함하여 행정심판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화된 행정사건에 적극적 응소를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(안 제10조제5항)
- 나. 중요소송 지정에 행정심판 등을 포함하여 신설(안 제27조제4호)
- 다.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수입료 지급 기준 구체화(안 제28조제1항)
- 라.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최대 5천만원으로 하고,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누어 지급 기준안 설정(안 제29조제3항~제5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정책기획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[【http://www.sdm.go.kr】](http://www.sdm.go.kr) 규정소식(입법예고)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8747, 팩스 02-330-1442